

【질문 2 :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에 대하여】

<회답>

1.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증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

(1) 청색신고법인이 2011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, 지역고용개발촉진법 제 7조에 규정한 지역(동경, 오사카, 아이치 등의 대도시는 제외 한다)에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 당기 말 고용자의 수가 전기 말 고용자의 수에 비하여 5명 이상(중소기업은 2명 이상)이며 동시에 10% 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,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새로이 고용된 종업원의 수 × 40만엔

단,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10%(중소기업은 20%)를 한도로 한다.

2.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에 대하여

(2) 2013년도 세제 개정 시, 개인소득의 증대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기업의 노동분배(급여 등 지급)를 촉구하는 소득확대 촉진세제가 새로 도입되었다. 소득확대 촉진세제는 고용자에 대한 급여 등 지급액을 증가시키고,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 당해 지급증가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. 요건과 개요는 다음과 같다.

① 적용하려는 연도의 급여 등 지급액이 기준연도의 급여 등 지급액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가할 것

② 적용하려는 연도의 급여 등 지급액이 전년도의 급여 등 지급액보다 증가할 것

③ 1인당 급여 등 지급액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

본 제도는, 보다 많은 기업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완화하거나 공제비율을 증가하는 등 법 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.